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449호

제출년월일 : ２０２０년 4월 27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제안이유

4차산업혁명, 도시재생 등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환경경제국,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국을 두도록 함.(안 제3조)

나. 감사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함.(안 제4조)

다. 행정지원국에는 총무과, 주민협치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라.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 스마트도시과, 홍보전산과, 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마. 주민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자립지원과, 가족정책과, 출산보육과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바. 환경경제국에는 녹색환경과, 일자리경제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를 두도록 함.(안 제8조)

사. 도시관리국에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를 두도록 함.(안 제9조)

아. 안전교통국에는 안전재난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자.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의 설치와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별표 1,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조의2, 제112조, 제113조, 제117조부터 제120조까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3조
-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 3.26. ~ 2020. 4.16.)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13조, 제117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 및 직속기관의 담당관·과장 등 보좌·보조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 본청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환경경제국,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감사, 조사, 민원 관리, 계약심사, 환경순찰 등에 관해 부구청장을 보좌하기 위해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주민협치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청사관리, 인사, 직원능력개발 및 후생복지,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 동행정 지원, 자원봉사,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회단체 지원 총괄, 민관협치,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정책,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학교지원, 평생교육,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및 문화·예술, 생활체육, 문화·체육시설 설치관리,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5. 민원행정, 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국·담당관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스마트도시과, 홍보전산과, 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조정, 구정비전개발, 예산, 성과관리,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조성·지원, 빅데이터,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정홍보, 구정의 정보화, 전산운영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4. 국·공유재산관리, 계약, 물품관리, 지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세입과 세외수입 총괄, 체납지방세·세외수입 징수와 과년도 포함 체납징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에 관한 사항
6. 재산세 부과·징수,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법인 세무조사 등 세원관리, 개별주택가격 및 기타물건 과세표준액 조사와 결정 공시에 관한 사항
7. 등록면허세(차량등록 및 면허)·지방소득세·주민세·자동차세·차량취득세의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주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자립지원과, 가족정책과, 출산보육과를 둔다.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기획, 재해구호, 보훈단체 지원, 지역협의체 운영과 민관협력 체계 구축, 긴급복지지원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돌봄SOS사업 운영, 1인 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어르신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고령친화도시 조성, 경로당 설치 및 관리, 기초연금,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어르신일자리 및 인생이모작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법인·단체 지원 및 관리, 장애인 등록과 생활안정 지원,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업무, 자활지원계획 수립·시행,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변동관리에 관한 사항
4. 여성정책 수립 및 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리,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아동친화도시 조성,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드림스타트 운영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보육사업, 출산 장려에 관한 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아동수당에 관한 사항

제8조(환경경제국에 두는 과) ① 환경경제국에 녹색환경과, 일자리경제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를 둔다.

② 환경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수질·토양오염 관리, 소음·진동대책,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창출·지원, 지역경제진흥, 유통, 전통시장 활성화, 청년정책사업 추진 및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관리, 불량공중선 정비와 지중화 사업, 전문건설업과 건설기계 등록 관리, 옥외 광고물 허가·신고 및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등 광고물 관리, 가로환경 순찰과 정비에 관한 사항
4.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 공원문화프로그램 운영,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 안양천생태공원 업무 등에 관한 사항

5. 청소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생활폐기물 처리,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 환경미화원 인사·복무, 자원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및 처리,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① 도시관리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거급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공동주택 실태조사, 재건축, 위반건축물 관리 및 주택임대사업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및 결정, 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건축행정 업무의 정책수립과 심사, 구 영선사업 추진, 건축허가 관련사항, 건축물 안전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사항
5. 지적공부 관리 및 토지이동,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도로명주소 사업, 부동산중개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① 안전교통국에 안전재난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를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관리 및 조정, 재난안전 관리 계획 수립, 양천생활안전체험관 운영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2. 도로건설사업 및 도로·조명 등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 굴착복구 인·허가에 관한 사항
3. 하수사업, 풍수해대책, 하천·유수지·빗물저류시설, 배수펌프장과 수문 기전설비에 관한 사항
4. 교통종합대책 및 수송대책,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자동차 등록 및 신고, 자동차 검사, 교통체계개선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확충 및 주·정차 위반 지도·단속, 운수사업체 지도·감독, 운수과징금 및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3장 보건소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소장) ① 보건소에는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방역대책 수립 및 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4.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5. 구민건강증진 및 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6.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병리검사·약무에 관한 사항
8.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제4장 동

제14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직무) ①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② 동은 동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

제16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환경경제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교통지도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치수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하며, 제8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치수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치수과 치수담당 주사"를 "안전재난과 재난관리기금 담당 주사"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국장, 주민복지국장, 환경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주민복지국장, 환경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제1호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9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복지국장, 환경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복지국장, 환경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환경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제9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환경경제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기획재정국장”을 “환경경제국장”으로, “환경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환경경제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각각 “환경경제국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환경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환경경제국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 중 “복지정책과장”을 “자립지원과장”으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중 “복지정책과장”을 “자립지원과장”으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어르신장애인과장”을 각각 “자립지원과장”으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5항 및 제8조제1항제2호 중 “어르신장애인과장”을 각각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

㉒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중 “어르신장애인과장”을 “자립지원과장”으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6항 중 “어르신장애인과장”을 “자립지원과장”으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5항 중 “어르신장애인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제3항 중 “어르신장애인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 자립지원과장”으로 하고, 제38조제5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하며, 제44조제1항제2호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㉖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㉗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㉘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㉙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2조제3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㉚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5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㉛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 조례」 제11조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

정책과장”으로 한다.

㉜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㉝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국장”을 각각 “환경경제국장”으로 한다.

㉞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국장”을 각각 “환경경제국장”으로 한다.

㉟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국장”을 각각 “환경경제국장”으로 한다.

㊱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1조제2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환경경제국장”으로 한다.

㊲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제2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환경경제국장”으로 한다.

㊳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4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환경경제국장”으로 한다.

㊴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중 “어르신장애인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㊵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㊶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2조제1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㊷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4항제2호 및

제16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㊹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9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㊺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㊻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4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㊼ 「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제7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㊽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각각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㊾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환경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㊿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한다.

51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8호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52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제2항 중 “환경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53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중 “환경도시국장”을 “환경경제국장”으로 한다.

5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환경도시국장”을 “환경경제국장”으로 한다.

55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중 “환경도시국장”을 “환경경제국장”으로 한다.

56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중 “환경

도시국장”을 “환경경제국장”으로 한다.

57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제31조제3항제1호 중 “환경도시국장”을 “환경경제국장”으로 한다.

58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제4조제3항 중 “환경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관리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59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3항 중 “환경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60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6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별표 1〉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1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양천구보건소	양천구 목동서로 339	양천구
목동보건지소	양천구 목동중앙본로7가길 11	목 동
신월보건지소	양천구 남부순환로 407	신월동

〈별표 2〉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4조 관련)

동주민센터명	위 치	관 할 구 역
목1동 주민센터	양천구 목동서로 192 (목동 919번지3호)	목동 931번지를 기점으로 목동 408-78호과 목동 927-13호에 이르는 도로에서 목동로를 따라 808-1호에서 목동종합운동장에 이르는 국회대로 남측지역을 경계로 하고 안양천에 접한 지역
목2동 주민센터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20 (목동 530번지6호)	목동 507-11호를 기점으로 공항대로를 따라 목동 517번지를 종점으로 한 이남지역과 안양천, 목동중앙로의 서쪽지역 중 목3, 4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목3동 주민센터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6나길 55 (목동 642번지1호)	목동 721-5호를 기점으로 등촌로를 따라 목동 606-1호를 종점으로 한 동쪽지역과 공항대로 남측지역 중 목2, 4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목4동 주민센터	양천구 목동중앙로25 (목동 904번지19호)	목동 722-1호를 기점으로 등촌로를 따라 807-6호를 종점으로 한 동쪽지역과 국회대로 북측지역 중 목2, 3, 5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목5동 주민센터	양천구 목동서로 41 (목동 908번지 32호)	목동교 진입 911-7번지를 기점으로 국회대로를 따라 목동중앙로의 교차지점을 종점으로 한 북측지역과 목동중앙로 동측지역에서 안양천에 접한 지역으로 목동아파트 1~6단지와 한신·청구아파트를 포함한 지역
신월1동 주민센터	양천구 곰달래로1길38 (신월동 135번지18호)	신월동 90-1호를 기점으로 하여 가로공원로을 따라 146-1호를 종점으로한 이남지역 중 남부순환로를 서쪽 경계로 하고 국회대로 남쪽경계로 하여 강서구와 접한 지역
신월2동 주민센터	양천구 중앙로53길 47 (신월동 483번지11호)	신월동 448-1호~455-6호상의 국회대로와 신월동 455-1호 ~502-5호의 중앙로, 신월동502-5호~512-7호의 신월로 및 신월동448-1호~512-7호의 월정로를 경계로 한 안쪽지역과 신월동 608-2호~602-8호의 신월로 이남지역 중 신월6동과 신정3동 관할지역을 제외한 지역
신월3동 주민센터	양천구 남부순환로54길 5 (신월동 167번지 5호)	신월동중 국회대로 신월 I·C를 기점으로 국회대로 북쪽지역과 남부순환로 서쪽지역 중 부천시와 강서구에 접한 지역
신월4동 주민센터	양천구 오목로5길34 (신월동425번지 2호)	신월동 412-7호를 기점으로 534-24호를 연결하는 도로를 경계로 한 남서지역 중 신월로와 남부순환로, 국회대로 안쪽에 위치한 지역

동주민센터명	위 치	관 할 구 역
신월5동 주민센터	양천구 화곡로4길 10 (신월동 52번지 2호)	신월동 50-5호를 기점으로 하여 가로공원로을 따라 88-31호를 종점으로 한 이북지역중 남부순환로 동쪽 지역과 강서구에 접한지역
신월6동 주민센터	양천구 남부순환로 609 (신월동 559번지 3호)	신월동 601-6호를 기점으로 591-1호를 종점으로 한 서측지역과 신월로 남측지역 중에서 신정3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신월7동 주민센터	양천구 남부순환로70길 16-3 (신월동 962번지 10호)	신월동 중 국회대로 이남지역으로 남부순환로와 신월로 안쪽에 위치하며 신정3동 관할구역을 제외하고, 경기도 부천시와 접한지역
신정1동 주민센터	양천구 중앙로32길 1 (신정동 1051번지11호)	신정동 313-1호를 기점으로 신월로를 따라 신정동 1031-1호를 종점으로 하고, 중앙로를 따라 목동동로와 교차지점을 종점으로 하여 신정 6, 7동 경계인 목동서로 이북지역
신정2동 주민센터	양천구 목동동로 154 (신정동 329번지9호)	신정동 86-1호를 기점으로 도로를 따라 신정동 1279번지를 종점으로 한 이남지역과 목동동로 동측지역 중 신정6동 관할지역을 제외하고 안양천에 접한 지역
신정3동 주민센터	양천구 중앙로 209 (신정동 1263번지)	신정동 1190-4호를 기점으로 신월로를 따라 신정동 1194-1호를 종점으로 한 남측지역과 신정동 1190-4호를 기점으로 중앙로를 따라 구로구 경계지점을 종점으로 한 서측지역 중 신월6·7동 관할구역을 제외하고 구로구와 접한 지역
신정4동 주민센터	양천구 오목로34길 5 (신정동 949번지5호)	신정동 898-1번지를 기점으로 목동로를 따라 신정동 1007-9호를 종점으로 한 서측지역 중 신월로, 중앙로, 국회대로 길로 구획된 안쪽지역
신정6동 주민센터	양천구 목동서로 353 (신정동 322번지9호)	신정동 318~322, 868번지와 목동아파트 8·13·14단지를 포함하고 안양천을 경계로 한 서측지역
신정7동 주민센터	양천구 목동동로 37 (신정동 324번지5호)	신정동 323, 324번지와 목동아파트 11, 12단지, 양천아파트, 칼산지역을 포함하고, 구로구와 안양천을 경계로 하는 지역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 ② (생 략)

③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④ (생 략)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 략)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18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19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0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 ③ (생 략)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⑦ ~ ⑧ (생 략)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1. 실 · 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 · 국의 수
구	특별시의 자치구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비 고

1 . ~ 6 . (생 략)

7.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 · 군 · 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② (생 략)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보건소의 설치) ① **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는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